

# 학과평가 규정

## 제 1 장 총 칙

**제1조 (목적)** 이 규정의 목적은 서울신학대학교(이하 “본교”라 한다) 학과평가지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있다.

**제2조 (학과평가의 취지)** 학과평가는 각 학과의 지표에 대한 대내외간의 비교를 통해 객관적인 현황 파악과 이를 통한 학과의 발전, 나아가 대학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한다.

**제3조 (주관부서)** 학과평가는 평가지원실에서 시행하며, 그 결과의 활용은 기획처에서 주관한다.

## 제 2 장 학과평가위원회

**제4조 (학과평가위원회)** ① 학과평가 시행을 위하여 학과평가위원회(이하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 위원장은 평가지원실장으로 하며, 4대 계열(사회, 신학, 예능, 어문) 대표를 포함 하여야 하며 계열구분은 별표1과 같다.

③ 간사는 평가지원실 담당자로 한다.

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다룬다.

1. 학과평가 지표에 관한 사항
2. 학과평가 심사에 관한 사항
3. 학과평가 규정에 관한 사항
4. 기타 학과평가와 관련된 사항

## 제 3 장 운 영

**제5조 (평가대상)** 학과평가는 본교의 각 학과를 대상으로 실시하며, 다음의 경우에는 당해연도 학과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.

① 재학생이 존재하지 않는 학과

② 편제미완성 학과

③ 졸업생 미배출 학과

**제6조 (평가지표)** ① 평가지표는 교수, 교육, 교육성과, 학과활동의 4개 영역으로 한다.

② 각 영역별 평가지표는 별표2와 같다.

**제7조 (평가주기 및 시기)** 학과평가는 1년 단위로 실시하며, 매년 1학기 초에 전년도 1,2학기에 대해 평가한다.

**제8조 (평가방법)** 평가방법의 세부사항은 별표3, 별표4의 기준 점수, 별표5의 기타세부 내용에 따르며,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학과평가위원회의 결의에 따른다.

**제9조 (순위)** 평가결과를 토대로 학과 순위를 정한다.

**제10조 (평가결과 활용)** 평가결과는 인센티브 부여, 학생정원조정, 장학금 배정 등에 활용할 수 있다.

## 부칙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4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.

② (규정의 폐기) 이 규정은 학과평가위원회의 심의와 총장의 승인을 받아 폐기한다.

## 부칙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 부칙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7년 11월 15일부터 시행한다.

<별표1> 학과평가의 계열 구분

계열	어문	사회	예능	신학
학과	영어, 일본어, 중국어	사회복지, 유아교육, 보육, 관광경영	교회음악, 실용음악	신학, 기독교교육

<별표2> 평가지표 및 배점

평가영역	평가항목	배점	산식	기준일자	평가방식	비고
1.교수 (29)	1.1 전임교원1인당 교내연구비	5	1인당 교내연구비	전년도	외부상대평가	공시 12-가
	1.2 전임교원1인당 교외연구비	5	1인당 교외연구비	전년도	외부상대평가	공시 12-가
	1.3 전임교원1인당 논문실적(국내외)	5	전임교원 1인당 전문학술지 논문수(국내+국제)	전년도	외부상대평가	공시 7-가, 나 *예술계열은 "공인된" 연주회장에서의 연주(업적평가)
	1.4 전임교원1인당 저역서 실적	5	전임교원 1인당 저역서	전년도	외부상대평가	
	1.5 업적평가 평균점수	9	소속전임교원 업적평가 점수의 평균(영역별 T값 산정)	당해 연도 업적평가	교내상대평가	*업적평가(부분)면제자는 제외 *연구영역 제외
2.교육 (48)	2.1 중도탈락률	11	제적생수÷재적학생 반영점수:140-T값	당해연도 4.1	외부상대평가	공시 4-사
	2.2 신입생충원율(정원내)	11	입학자수(정원내)÷모집인원(정원내)	당해 학년도	외부상대평가	공시 4-다
	2.3 입시지원율(정원내)	9	지원자수(정원내)÷모집인원(정원내)	당해 학년도	외부상대평가	공시 4-다
	2.4 강의평가 평균	2	소속 전임교원 전공과목 강의평가 평균점수	당해연도 1,2학기	교내절대평가	
	2.5 전임교원 강의담당비율	4	전임교원 강의학점÷총개설강의 학점	당해 연도 1,2학기	외부상대평가	공시 12-나
	2.6 전공과목 성적관리	5	A학점학생수÷성적인정학생총수	당해 연도 1,2학기	교내절대평가	공시 2-가 (A학점 비율)
	2.7 학생상담 지도 실적	3	소속 전임교원 상담건수의 합÷소속 전임교원 수	당해 연도	교내절대평가	업적평가 1-2-3
	2.8 교수 1인당 지도학생수	3	재학생수(정원내외)÷소속 전임교원수	당해 연도 4.1	교내절대평가	공시 4-마(재학생수) 공시 12-가(전임교원수) *주야간 학생수 합산 *예술계열은 재학생 *1.25 적용
3.교육 성과 (13)	3.1 취업률	4	학과별 취업률	당해 연도 6.1.	외부상대평가	공시5-다 교내 취업은 분모, 분자에서 제외 *취업률 미공시학과는 배점만큼 총취득점수 비율로 부여

평가영역	평가항목	배점	산식	기준일자	평가방식	비고
	3.2 취업자수 추이	6	당해연도 취업자수 -전년도 취업자수	당해 연도 6.1.	교내절대평가	
	3.3 학생만족도	3	학과별 평균점수로 T점 수 산출	전년도 11월	교내상대평가	학과에 대한 문항만 반영
	기본점수	10				
	계	100				

<별표3> 평가지표별 기준 점수(교내절대평가지표)

평가 항목	100점	90점	80점	70점	60점
2.4강의평가평균(점)	85이상	82이상	79이상	76이상	76미만
2.6전공과목성적관리(%)	28미만	32미만	36미만	40미만	40이상
2.7학생상담지도실적(점)	120이상	117이상	114이상	111이상	111미만
2.8교수1인당지도학생수(명)	40이상	36이상	32이상	28이상	28미만

<별표4> 취업률 기준 점수

구분	100점	97점	94점	91점	88점
3.2취업자수 추이	+ 3명	+ 2명	+ 1명	0명 이하	

<별표5> 기타세부내용

<p>○ 평가방식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교내절대평가: 지표별 급간에 의한 점수 부여</li> <li>-외부상대평가: 타대학 동일학과의 지표와 상대평가하여 T값 반영</li> <li>-교내상대평가: 교내 타학과의 지표와 상대평가하여 T값 반영</li> <li>-직접점수부여: 학과평가위원회 위원이 직접 점수 부여</li> </ul> <p>○ 상대평가 지표 산식</p> <p>※ T점수 산출식 : <math>z = \frac{X-m}{a}</math> (X= 지표값, m= 평균, a= 표준편차), <math>T = 10z + 70</math></p> <p>(정부재정지원제한평가의 T값 산출식 준용)</p>
---

※ 지표별 최저점수(20점) 적용

- 타대학 동일학과는 재학생5천명이하 사립대학 동일 학과군의 평균값과 학과에서 추천한 타대학 동일학과 2개를 포함하여 T값 계산
- 주야간이 함께 있는 학과는 주간만을 비교대상으로 함.(교원관련 지표는 제외)
- 예능계열의 연구지표(1.3 논문실적, 1.4 저역서실적)는 업적평가 중 “공인된” 연주회장에서의 연주 점수와 비예능계열의 전문학술지 점수의 비율을 산정하여 그 비율에 따라 T점수 부여
- 표준편차가 발생하지 않는 외부상대평가 지표는 나머지학과의 평균 T값 부여
- 신설학과의 취업률 추이
  - 졸업생이 발생하여 학과평가에 처음 진입한 학과의 취업률 추이는 0%p를 적용함.
- 업적평가의 교원 소속은 당해연도 4.1. 기준